

의안번호	2209322
의 퇴 인	김재원의원
회 답 일	2025.4.3.
추계번호	25E190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고궁 및 왕릉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26조의2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	○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고궁과 왕릉 등을 관람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(궁·능시설이용분)에 대하여 30%의 소득공제 적용 - 궁·능시설 이용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6조의2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고궁·왕릉을 관람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30%의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현행 대중교통, 전통시장, 문화체육분 사용분(25.7.1.부터 적용)을 제외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15%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,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궁·왕릉 관람비용에 대해 15%의 추가공제가 적용됨
- 이에 대한 세수변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연간 고궁·왕릉 관람객 수, 이들의 연평균 관람료 지급액 등에 대한 자료 필요
 - 1인당 연평균 관람료에 추가 소득공제율 15%, 평균실효세율, 연간 관람객 수,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 등을 곱하여 추정 가능

- 그러나, 궁·능시설 이용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, 관람객 1인당 연간 관람료 지급액도 알 수 없어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추계 곤란
- 참고로, 연간 궁·능유적 관람료로 10만원을 지출한 경우, 추가공제율 15%,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결정세액 있는 자의 평균 실효세율(=산출세액/과세표준) 9.8% 적용 시 1,470원의 근로소득세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 - 다만, 관람자 중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결정세액이 있는 자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
 -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39.6%임

[표 1] 궁·능유적 관람요금 현황

(단위: 원)

궁능유적	개인(대인)
경복궁	3,000
창덕궁 (전각관람)	3,000
창덕궁 (후원관람 - 경로)	5,000
창덕궁 (후원관람 - 대인)	5,000
창덕궁 (후원관람 - 소인)	2,500
창경궁	1,000
덕수궁	1,000
종묘	1,000

자료: 궁능유적본부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